

제8장 정부조달

제8.1조 일반규정

1. 당사국들은 이 장이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무역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정부조달 시장의 효과적, 상호적 그리고 점진적 개방을 증진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 당사국들은 조달 사항에 대하여 양자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8.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적용대상조달에 관한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조달**이란 정부 목적의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조합의 정부조달로 다음을 말한다.
 - 가.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조달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지 아니하는 것
 - 나. 구매, 리스, 그리고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할부 구매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 수단에 의한 것
 - 다. 제8.6조에 따른 공고의 공표 당시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정된 조달금액이 부속서 8-가에 각 당사국에 의하여 명시된 관련 기준가와 같거나 초과하는 가액의 것
 - 라. 조달기관에 의한 것, 그리고
 - 마. 이 장의 적용범위로부터 달리 배제되지 아니하며, 부속서 8-가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것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토지, 기존 건물 또는 그 밖의 부동산, 또는 이들에 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임차
 - 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협력협정, 무상교부, 용자, 지분참여, 보증, 재정적 유인, 보조금, 정부가 주, 지역 또는 지방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¹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재무 대리 또는 예탁서비스, 규제되는 금융기관의 청산 및 관리서비스, 또는
 용자 및 정부채권, 어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포함한 공적 부채와 관련된
 서비스의 조달 또는 취득
 - 라. 공공고용계약 및 관련 조치
 - 마.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조달
 - 1) 군대 주둔과 관련되거나 사업 서명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 협정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는
 - 2) 국제기구의 특정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거나 국제적 공여, 차관
 또는 그 밖의 지원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용 가능한 절차나
 조건이 이 장과 불합치하는 것, 그리고
 - 바.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국제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조달
4. 당사국의 법규가 적용대상조달을 조달기관을 대신하여 부속서 8-가에 열거되지 아니한
 그 밖의 기관 또는 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제8.4조의 규정을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동등하게 적용한다.

계약가액 산정

5. 적용대상조달인지 여부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조달가액을 추산할 때, 조달기관은
- 가. 조달을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할 의도로 해당
 조달을 별개의 조달로 나누지 아니하며, 조달가액 추산을 위한 특정 가액평가
 방법을 사용하지도 아니한다.
 - 나. 다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 1) 할증료, 요금, 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 2) 그 조달이 선택 조항의 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택
 구매를 포함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 그리고
 - 다. 조달이 동시에 또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공급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으로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는 경우, 그 조달의 전 기간에 걸친
 최대 총 조달가액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6. 조달의 전 기간에 걸친 추정 최대 총 조달가액이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그 조달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8.3조 예외

1. 그러한 조치가 같은 조건하에 있는 당사국들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당사국들 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조치

2. 당사국들은 제1항나호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8.4조 일반원칙

내국민 대우 및 비차별

1. 이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각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및 서비스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에게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은,

- 가.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국내에 설립된 한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을 위하여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공급자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관세 및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밖의 수입규정 또는 절차, 그리고 적용대상조달을 규율하는 조치 이외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자적 수단의 이용

4.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는 때에, 조달기관은

- 가. 정보의 인증 및 암호화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정보기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달이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 나. 접수 시간의 설정과 부적절한 접근의 방지를 포함하여,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대응구매의 금지

5. 이 장 또는 그와 관련된 부속서에 포함된 예외에 따라,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적용대상조달의 모든 단계에서 대응구매를 모색, 고려, 부과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원산지 규정

6. 적용대상조달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자국이 이와 동시에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수입하거나 공급받는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달의 수행

- 7. 조달기관은 적용대상조달을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 가. 공개입찰, 선택입찰 및 제한입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이 장에 합치하는 방식
 - 나. 이해 상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 다. 부패 관행을 방지하는 방식

제8.5조 조달 정보 및 조치의 공표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자국의 조달 법, 규정, 절차,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모든 변동 또는 추가사항을,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신속하게 공표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들의 적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제8.6조 공고

조달예정공고

1. 각 적용대상조달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제8.11조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입찰서 또는, 적절한 경우, 해당 조달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러한 공고는 조달 입찰을 위하여 설정된 전체 기간 동안, 널리 유포되고 대중이 무료로 쉽게 접근 가능한 전자 또는 종이 매체로 공표한다. 각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인터넷 또는 비슷한 망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하나의 창구에 전자적으로 조달예정공고를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2.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달예정공고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조달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그러한 기관에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 그리고 이들의 비용과 지불조건이 있다면 그 비용과 지불조건
 - 나.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하는 조달에 대한 설명
 - 다. 사용될 조달 방법과 그 방법이 교섭 또는 전자 경매를 수반할지 여부
 - 라. 적용 가능한 경우, 조달 참가 신청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 마. 입찰서 제출 주소 및 마감일
3. 다음의 정보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한다.
 - 가. 반복계약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후속 조달예정공고의 시기에 대한 예상
 - 나. 선택사항에 대한 기술
 -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 기간 또는 계약 기간
 - 라.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특정 서류 또는 증명서에 대한 모든 요건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 및 간단한 설명. 다만, 그러한 요건이 조달예정공고와 동시에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입찰서류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조달기관이 제8.8조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적격 공급자를 입찰 참가 권유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과, 적용 가능한 경우,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모든 제한, 그리고
 - 바. 해당 조달이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적시

조달계획공고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달기관이 매 회계연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를 당사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도록 권장한다. 그 공고는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최소한 조달의 대상 및 조달예정공고에 대한 공표 계획일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제8.7조 참가조건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상업적,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 가. 해당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안과 밖 모두에서의 공급자의 영업활동에 기초하여 그 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다.
 - 나.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명시한 조건에만 근거하여 평가한다.
 - 다.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되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그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조달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이전의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3.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공급자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파산
 - 나. 허위 신고
 - 다. 종전의 하나 또는 복수의 계약상의 실질적인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흠결
 - 라. 중대한 범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최종 판결
 - 마. 공급자의 상업상 무결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 행위, 작위나 부작위, 또는
 - 바. 세금 미납

제8.8조 공급자의 등록 및 자격심사

등록제도 및 자격심사절차

1.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이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 참가하도록 허락되기 전에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조달기관을 포함한다)은 공급자에게 등록 또는 사전자격심사에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공지가 관심있는 공급자가 지원에 착수할 수 있고, 조달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립가능한 한도에서, 등록 및/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 내에 공표되도록 보장한다.

선택입찰

2. 당사국의 법이 선택입찰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각각의 예정된 조달에 대하여,

- 가. 관심있는 공급자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조달기관이 그러한 신청서를 기초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충분히 사전에 조달 참가를 신청하도록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공고를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조달기관이 조달예정공고에 또는, 공개된 경우, 그 입찰서류에 입찰에 허용될 공급자 수의 제한 및 그러한 제한 기준을 기술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한 모든 국내 공급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공급자 명부

3. 관심 있는 공급자들에게 해당 명부에 포함될 것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공고가 연간 발행되거나, 달리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경우 조달기관은 공급자 명부를 설립할 수 있다. 공급자들에게 공급자 명부에 포함되도록 신청할 것을 권유하는 공고는 조달기관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 기관에 접촉하여 명부 포함에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한다. 조달기관은 다음을 이용가능하게 한다.

- 가. 공급자 명부가 사용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이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
- 나. 공급자들이 충족하여야 할 참가 조건과 조달기관이 공급자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방법, 그리고
- 다. 공급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급자 명부 사용의 종료를 통보할 방법의 적시

4.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공급자 명부예의 등재를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적격 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

5. 공급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자가 공급자 명부에 근거한 조달로의 참가 신청서 및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8.9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자격요건을 만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검토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그 조달의 복잡성 때문에 그 기관이 신청에 대한 검토를 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요건을 만족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제8.9조 기간

1. 조달기관은 조달의 성격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에의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찰서를 준비 및 제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2. 선택입찰을 사용하는 조달기관이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설정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마감일을 정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기간이 10일 미만일 수 없다.

3.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달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자를 다음의 날부터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가. 공개입찰의 경우,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 또는

나. 선택입찰의 경우, 조달기관이 공급자 명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라고 조달기관이 그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날

4. 조달기관은 다음의 경우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10일 이상이 되게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기관이 부속서 8-다에 열거된 전자적 수단으로 제8.6조제4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공고를 최소 40일, 그리고 12개월을 넘지 아니할 만큼 미리 공표한 경우

나. 반복적인 성격의 조달에 대한 공고를 2차 또는 후속 공표하는 경우

다. 조달기관에 의하여 적절하게 증명된 긴급사태로 그러한 기간이 실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라. 조달기관이 비정부적 목적으로 비정부적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그리고 비정부적 구매자에 의하여 비정부적 목적으로 관례적으로 구매되고 사용된, 상업적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5. 조달기관은 제3항에 규정된 입찰기간을 다음의 상황 중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5일씩 단축할 수 있다.

가. 조달예정공고가 전자적 수단으로 공표되는 경우

나. 모든 입찰서류가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일부부터 전자적 수단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 입찰서가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기관에 의하여 접수될 수 있는 경우

6. 제4항과 연계하여 제5항의 원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규정된 입찰 기간이 조달예정공고가 공표된 날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제8.10조 예정된 조달에 관한 정보

입찰서류

1. 조달기관은 조달에 참여하는 데 관심있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응찰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입찰서류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2. 조달예정공고에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서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포함한다.

가.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수량,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 수량을 포함한 해당 조달 및 기술규격, 적합성평가 인증, 계획서, 설계도 또는 사용설명서 자료를 포함한 충족시켜야 하는 모든 요건

나. 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정적 보증, 정보 및 서류를 포함한 공급자의 모든 참가조건

다. 계약 낙찰에서 고려될 모든 평가 기준, 그리고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

라.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평가 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 경매 수행의 근거가 되는 규칙

마. 공개 개찰이 있을 경우, 개찰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 권한이 있는 인물

바. 지불조건 및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과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조건, 그리고

사. 상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3. 조달기관은 조달에 관심있는 공급자 또는 참가하는 공급자의 관련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답변한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그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보다 유리한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 요청은 해당 기한 내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4.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국의 법규가 복수의 언어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언어 중 하나는 영어이다.

기술규격

5. 조달기관은 당사국들 간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거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다.

6. 조달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규격을 규정함에 있어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가.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및 기능적 요건을 기준으로 기술규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 규격을 그러한 국제표준에 기초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국가기술규정, 인정된 국가표준 또는 건축법규에 기초한다.

7. 기술규격에 디자인이나 외형적 특성이 사용되는 경우, 조달기관은 적절한 경우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 조달의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시키는 동등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입찰서를 고려할 것임을 적시한다.

8. 조달기관은, 조달의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자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조달기관은 특정 조달을 위한 기술규격의 준비 또는 채택에 사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당 조달에 상업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인으로부터, 경쟁을 미리 배제하는 효과를 갖게 될 방식으로 구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은 이 조에 따라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규격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할 수 있다.

수정

11. 조달기관이 조달 과정에서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기준 또는 기술요건을 수정하거나,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개정 또는 재발행하는 경우, 해당 조달기관은 그러한 모든 수정사항 또는 개정되거나 재발행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전달한다.

가. 수정, 개정 또는 재발행 당시 참가한 모든 공급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전달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나. 그러한 공급자가 적절하게 수정하여 개정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할만한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한다.

제8.11조 제한입찰

1. 조달기관이 공급자 간 경쟁을 피하려는 목적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자국의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조항을 원용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상황에서 제한입찰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입찰서류의 요건이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경우

- 1)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 2) 입찰서류상 필수적 요건에 부합하는 입찰서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3) 입찰 참가조건을 충족하는 공급자가 없는 경우, 또는

- 4) 제출된 입찰서가 담합에 의한 것일 경우
- 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공급자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고 다음의 이유로 합리적인 대안 또는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1) 요건이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인 경우
 - 2) 지식재산권 또는 그 밖의 배타적 권리의 보호, 또는
 - 3) 기술적인 이유로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
- 다. 최초 조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 공급자가 추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 1) 그러한 추가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 변경이 최초 조달에 따라 조달된 기존 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설비와의 상호호환성 또는 상호운용성 요건과 같은 경제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2) 그러한 구분이 조달기관에 중대한 불편 또는 상당한 비용 증복을 초래하는 경우
- 라. 엄밀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을 이용하여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시에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마. 원자재 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의 경우
- 바. 조달기관이 조사, 실험, 연구 또는 독자 개발을 위한 특정 계약을 목적으로 그 계약과정에서 조달기관의 요청으로 개발된 시제품 또는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최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독자 개발은 현장시험 결과를 포함하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용할만한 품질 기준으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한적 생산이나 공급을 포함할 수 있으나, 상업성을 확립하거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대량 생산 또는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디자인 경연대회 당선자에게 낙찰되는 계약의 경우
 - 1) 경연대회가 특히, 조달예정공고의 공표와 관련하여 이 장의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을 경우, 그리고
 - 2) 당선자에게 디자인 계약이 낙찰되게 할 목적으로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독립적인 심사인단에 의하여 판정을 받은 경우
- 아. 최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입찰서류 원본의 목적 내에 있는 추가적인 건설서비스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 서류에 기술된 건설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리고

- 자. 부속서 8-가에서 각 당사국이 설정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낙찰된 각 계약에 대하여, 조달기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기록을 유지하거나 서면 보고서를 준비한다.
- 가. 조달기관의 명칭
 - 나.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액 및 종류, 그리고
 - 다.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한 제1항에 기술된 상황과 조건을 적시하는 문안

제8.12조 전자경매

조달기관이 전자 경매를 이용하여 적용대상조달을 수행하려는 경우, 전자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 가.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 기준에 기초하고 경매 과정에서 자동 순위 또는 순위 재조정에서 사용될 수학적 공식을 포함한 자동 평가 방법
- 나.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모든 최초 평가 결과, 그리고
- 다. 경매 수행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

제8.13조 협상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자국의 조달기관이 협상을 수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 가. 그 기관이 제8.6조에 따라 요구되는 조달예정공고에서 협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적시한 경우
 - 나. 평가를 통하여,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특정 평가기준에 비추어 명백하게 가장 유리한 입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경우
2. 조달기관은
- 가. 협상에 참가하는 공급자의 탈락이 조달예정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보장한다. 그리고
 - 나. 협상이 타결된 경우, 나머지 참가 공급자에게 새롭거나 개정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공통적인 마감을 제시한다.

제8.14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조달기관은 조달 과정의 공정성 및 공평성을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모든 입찰서를 접수, 개찰 및 취급한다.
2. 조달기관은 최소한 입찰서 개찰 전까지 모든 입찰서를 비밀로 취급한다. 특히, 조달기관은 특정 공급자에게 공급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 법규에 따라 조달기관은 입찰서의 접수가 해당 조달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입찰서 접수에 명시된 시각 후에 입찰서를 접수한다.
4.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형식상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경우, 그 기관은 참가하는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

낙찰

5. 조달기관은 입찰서가 낙찰 대상으로 고려되기 위하여 입찰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개찰 시 입찰서가 공고 및 입찰서류에 규정된 필수 요건을 준수하며, 참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급자가 제출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6. 조달기관이 낙찰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달기관은,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조달기관이 판단한 공급자로서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공급자에게 계약을 낙찰한다.
 - 가. 가장 유리한 입찰서, 또는
 - 나. 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 최저가 입찰서
7. 조달기관이 제출된 그 밖의 입찰서의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및 계약 조건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공급자와 검증할 수 있다.
8. 조달기관은 이 장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조달을 취소하거나 낙찰된 계약을 해지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8.15조 낙찰 후 정보

1. 조달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낙찰 결정을 신속히 통지한다. 조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되지 아니한 공급자에게 그 조달기관이 해당 공급자의 입찰서를 선정하지 아니한 이유 및 낙찰자의 입찰서의 상대적 이점을 제공한다.
2. 조달기관은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각 계약의 낙찰 후,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각 당사국의 법규에서 정하는 기한에 따라, 부속서 8-다에 열거된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공고를

공표한다. 그 조달기관이 그 공고를 전자적 수단으로만 공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그 공고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 나.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다. 낙찰자의 이름
- 라. 낙찰금액
- 마. 낙찰일 또는 계약일, 그리고
- 바. 사용된 조달방법의 종류 및 제8.11조에 따라 제한입찰이 이용된 경우 제한입찰의 이용을 정당화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이는 해당 파일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할 수 있다.

3. 각 조달기관은 계약 낙찰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다음을 보존한다.

- 가. 제8.11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 또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입찰 절차 및 낙찰의 기록과 보고서, 그리고
- 나. 조달기관이 전적으로 전자적 수단으로만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대상조달 행위의 적절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제8.16조 국내 심의 절차

1.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적용대상조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장에 따른 당사국과 그 기관의 의무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심의 절차를 제공한다. 모든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규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2. 각 공급자는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부여 받으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이의제기의 근거가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던 때부터 10일 이상이다.

3. 각 당사국은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당사국의 공급자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이의제기를 당사국의 법에 따라 접수하고 검토할,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최소한 하나의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을 유지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당국 이외의 기구가 이의 신청을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당사국은 공급자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조달을 집행한 조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공평한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최초 결정을 상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법원이 아닌 심사기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가진다.

- 가. 조달기관은 이의제기에 서면으로 응답하고 심사기구에 모든 관련 서류를 공개한다.
 - 나. 심사절차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는 이의제기에 관한 심사기구의 결정 전에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 다. 참가자는 대표되고 동반될 권리를 가진다.
 - 라. 참가자는 모든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 마. 참가자는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 바. 공급자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또는 권고는 각 결정 또는 권고의 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공급자의 기회를 보존하는 신속한 잠정조치. 그러한 잠정조치는 조달 절차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을 포함하여 관련 이해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 나. 심사기구가 제1항에 규정된 위반 또는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각 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정정 행위 또는 보상

제8.17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참여

1. 당사국들은 정부조달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입찰절차에의 공동 참여를 포함하여, 각 당사국의 공급자 간,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간, 사업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특혜 규정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개발을 위한 조달 정책에 대한 기회를 증진할 조치를 채택, 개발, 유지 또는 이행할 수 있다.

제8.18조
정부조달에 대한 협력 및 기술지원

1. 당사국들은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과 기술지원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의 관심분야임에 동의한다.
2.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지속가능한 조달 및 혁신적인 조달 분야에서 규제 틀과 우수 관행과 같은 경험과 정보의 교환
- 나.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하여 공급자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 다. 기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달 기관을 위한 지식 및 기술 이전, 그리고
- 라. 전자조달을 위한 절차의 개선

제8.19조 적용범위의 정정 및 수정

1.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하여 순수하게 형식적인 성질의 정정 또는 부속서 8-가의 양허표에 사소한 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 통보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정 또는 사소한 정정을 하는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적용범위를 달리 수정할 수 있다. 다만,
 - 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전에 존재한 적용범위에 상응하는 적용범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그 통보에 적절한 보상조정을 동시에 제안한다. 그리고
 - 나. 다른 쪽 당사국은 통보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제거한 조달기관을 수정제안의 대상으로 한다고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상황에서는, 그 한쪽 당사국은 보상조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당사국이 그러한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국은 통보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하며 정부 통제 또는 영향력의 성질을 명료하게 하고 이 장에 따른 조달기관의 지속된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정보 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관련 당사국들이 정정, 사소한 개정, 조정 또는 제안된 수정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또는 통보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정은 제5항의 규정에 합치되게 이루어진다.
5. 협정의 공동위원회는 합의된 정정, 사소한 개정 또는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의 관련 절을 수정한다.

제8.20조 정부조달 위원회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 가. 이 장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평가하고, 당사국들에게 적절한 활동을 권고한다.
 - 나. 협력활동을 조정한다.
 - 다.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라. 제8.19조에 따른 통보의 목적상 문의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부여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회합한다.
4. 회의는 직접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참가조건이란 조달에 참가하기 위한 등록, 자격심사 또는 그 밖의 선행조건을 말한다.

건설서비스란 국제연합 잠정 중앙상품분류 대분류 51에 근거하여, 그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토목 또는 건축 공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자 경매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계량화가 가능한 입찰의 비가격 요소에 대한 새로운 가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공급자가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의 이용을 수반하고, 그 결과로 입찰 순위 또는 순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복적 과정을 말한다.²

서면으로란 독해 가능하고, 모사 가능하며 사후에 통지 가능한 모든 문자 또는 숫자로 된 표현을 말한다. 이는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한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하나 또는 복수의 공급자들과 접촉하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공급자 명부란 조달기관이 그 명부에 등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여 그 조달기관이 두 번 이상 활용하려는 명부를 말한다.

조치란 적용대상조달과 관련된 법, 규정, 절차, 행정 지침, 관행 또는 조달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조달예정공고란 조달기관이 관심있는 공급자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공표하는 공고를 말한다.

² 전자경매의 정의는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합의되기 전까지는 한국과 파나마 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응구매란 국산 재료의 사용, 기술 면허, 투자, 대응 무역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요건과 같이 국내 개발을 장려하거나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는 모든 조건 또는 약속을 말한다.

공개입찰이란 모든 관심 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달 방법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조달기관이란 당사국의 부속서 8-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한다.

적격 공급자란 조달기관이 참가조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선택입찰이란 조달기관이 적격 공급자들에 한정하여 입찰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방법을 말한다.

서비스란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표준이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상품, 서비스,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조달기관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인 또는 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기술규격이란 다음의 입찰 요건을 말한다.

- 가.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용적을 포함한 조달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을 규정한 것, 또는
- 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다루는 것